

2011년 7월 시험대비

출제경향이 한눈에 보이는

# 금융투자분석사

핵심요약 및 문제집 수록

Knowledge, Value, and Your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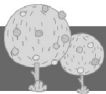
## 제4과목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

###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p.461 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p.465 ⑧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전체 내용 삭제

p.474 <V 공정거래행위 규제> 앞에 아래 내용 추가



#### V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 (1) 일반적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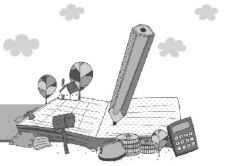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2) 취득방법

- ①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함.
  - 증권시장에서 취득
  - 공개매수
- ② 취득금액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함.
- ③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금액을 자기주식 취득금액으로 봄.

##### (3) 한도초과분의 처분

이익배당한도 등의 감소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함.



## 2 합병 등에 관한 특례

### (1) 적용대상 합병

- ① 다른 법인과의 합병
- ②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10% 이상)
-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

###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 ②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3) 외부평가기관

- 인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자
- 신용평가회사
- 회계법인

## 3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① 주식매수청구 대상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주총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함.
- ② 이러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해 해당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 ③ 매수한 주식은 매수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여야 함.



#### 4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 (1)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① 상법상 발행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4
- ② 상장법인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국가기간산업 중 해당법인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2
- ③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발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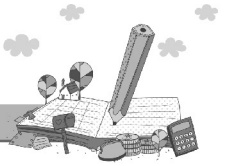
#### 5 기타 특례

- ①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허용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특별결의로서 정관에 정하는 경우
- ②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일반공모증자 허용
- ③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은 제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④ 법원의 인가 없이 주총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음.
- 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않음.
- ⑥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⑦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상장법인은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 ⑧ 상법규정(배당총액의 1/2)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주식 배당을 할 수 있음.

### 제3장 금융위원회 규정

p.53b 5 외국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 p.539 6 집합투자기구

→ 전체 내용 삭제



## 제4장 직무윤리

p.552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앞에 아래 내용 추가

### (1) 윤리경쟁력의 시대

- ① 윤리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됨.
- ② 비윤리적인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타율적 규제가 증가함.
- ③ 직무윤리는 대리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
- ④ 직무윤리는 법규와는 달리 자발성, 자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짐.

### (2)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 ① 루터 : 세상의 직업을 소명으로 봄.
- ② 칼뱅 : 근검, 정직, 절제를 통하여 부를 얻는 행위는 신앙인의 정당하고 신성한 의무 -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원동력
- ③ 베버 : 자본주의는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생긴 이윤추적의 결과

p.553 표 내용 추가

	이상 생략
5. 소속회사 등의 지도 지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금융투자분석업무 종사자가 소속된 회사 및 그 중간감독자는 당해 업무종사자가 관계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고 직무윤리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함.</li> <li>② 필요한 지도의 부족으로 소속 업무담당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와 중간감독자는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li> <li>③ 사용자 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와 그 중간감독자는 피용자가 업무집행상 타인에게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민법 제756조).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 함.                      피용자 자신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짐.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예 :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는 사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짐.                      사용자(또는 중간감독자)가 배상을 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li> </ul>



p.559 <(12) 부당한 금품수수 금지> 위에 아래 내용 추가

③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원칙의 예외

- ㉠ 법원의 제출명령, 영장
- ㉡ 조세법에 의한 정보 제공
- ㉢ 국정감사 자료관련 제공
- ㉣ 금융위 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시 필요한 경우
- ㉤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 ㉥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

④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이 되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 :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이 되는 정보 및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함.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함.

⑤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제공 거부 의무 및 제공 시의 사후처리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실명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나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주요내용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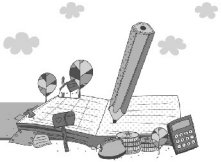
p.560 <② 자본시장 일반에 대한 의무> 위에 아래 내용 추가

(13)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 ①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공평하게”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하게” 라는 의미는 아니다.  
고객의 투자목적, 지식, 경험,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등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즉, 동일한 성격을 가진 고객집단에 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 및 시기 등이 동일하면 된다.

(14) 고객의 민원, 고충처리

- ①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1과목 증권분석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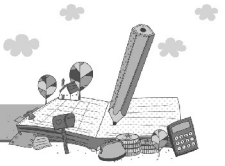
### 제장 계량분석

페이지	수정 내용	비고
12	<p><b>(2) 테일러 전개</b></p> <p>실제 해를 구할 수 없을 때 근사적으로 문제의 해에 접근하는 방법</p> $\sum_{n=0}^{\infty} \frac{1}{n!} f^{(n)}(a)(x-a)^n, \text{ 특히 } a=0 \text{ 일 경우를 매크로린 전개라고 함.}$	오타수정
15	<p>㉠ <u>표본표준편차</u> : <math>s = \sqrt{s^2} = \sqrt{\frac{1}{n-1} \sum_{i=1}^n (X_i - \bar{X})^2}</math></p>	오타수정
17	<p><b>(2) 상관계수(correlation)</b></p> <p>두 변수의 선형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나타내는 수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rho_{XY} = \frac{Cov[X, Y]}{\sqrt{Var[X]} \sqrt{Var[Y]}} = \frac{\sigma_{XY}}{\sigma_X \sigma_Y}</math> <p style="text-align: center;">단, <math>-1 \leq \rho_{XY} \leq 1</math></p> </div>	수식수정
21	<p><b>3)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추정과 예측</b></p> <p><u>공분산의 예측 또한 동일가중평균법과 지수가중평균법으로 가능함.</u></p> <p>상관계수의 예측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됨.</p>	내용보강
26	<p><b>(1) 분산분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SST = SSR + SSE</math> </div>	수식수정



페이지	수정 내용	비고
27	<p>1)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회귀식의 종속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p> $R^2 = \frac{SSR}{SST} = 1 - \frac{SSE}{SST}, \quad 0 \leq R^2 \leq 1$ <p>(1에 가까울수록 회귀선을 중심으로 밀집)</p> <p>※ <math>R^2</math>의 값은 독립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다중회귀 모형의 적합성 검정에서는 자유도를 고려한 수정결정계수 <math>\overline{R^2}</math> (<u>Adj <math>R^2</math></u>)을 이용함.</p> <p>4) F-검정 종속변수의 총변동을 회귀와 오차의 의한 제곱합으로 나누어 요인들의 효과를 분산분석표로 정리하고 F-검정을 수행할 수 있음.</p> $F = \frac{\text{회귀선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text{회귀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동}} = \frac{\frac{SSR}{d.f}}{\frac{SSE}{d.f}} = \frac{MSR}{MSE}$ $F = \frac{MSR}{MSE} \sim F(k-1, n-k)$	수식수정
28	<p>② 추세선에 의한 예측 : 최소자승법으로 <math>\alpha, \beta</math>를 추정하여 시계열 추정</p> $Y_t = \alpha + \beta t + \epsilon_t$	수식수정
29	<p>② 라그랑지 함수 : <math>L(x_1, x_2, \lambda) = f(x_1, x_2) - \lambda[g(x_1, x_2) - b]</math></p>	수식수정





## 제3과목 재무분석론

### 제1장 재무제표론

p.378 : 아래 내용으로 교체

**(1) 회계의 기본가정(K-IFRS)**

- ① 발생기준 : 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 ② 계속기업 :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

**(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됨.

p.380 : < ③ 재무제표 > 위에 아래 내용 추가

**(3)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K-IFRS)**

- 1) 이해가능성
- 2) 목적적합성
  - ① 예측가치
  - ② 확인가치
  - ③ 중요성
- 3) 신뢰성
  - ① 충실한 표현
  - ②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 ③ 독립성
  - ④ 신중성
  - ⑤ 완전성
- 4) 비교가능성
- 5) 회계정보의 제약요인
  - ① 적시성
  - ②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 ③ 질적 특성 간의 균형



페이지	수정 내용		비고
380	① 대차대조표	① 재무상태표	용어변경
380	Ⅱ 대차대조표론	Ⅱ 재무상태표론	용어변경
390	Ⅲ 손익계산서론	Ⅲ 포괄손익계산서론	단어수정

p.380 아래 내용으로 수정

### 1 재무상태표의 구분

- 자산**
1. 유동자산
  2. 투자자산
  3. 유형자산
  4. 무형자산
  5.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 자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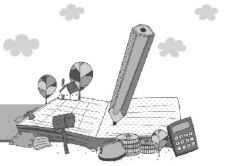
※ K-IFRS : 재무상태표에 구분표시될 최소한의 항목만을 열거

p.380 < 3 장기건설공사의 수익인식 > 내용 아래 다음 내용 추가

### 4 K-IFRS에서의 포괄손익계산서

- ① 포괄손익계산서는 총포괄손익 개념에 의하여 작성되며, 총포괄손익이란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본의 변동액을 의미  

$$\text{총포괄손익} = \text{당기순손익} + \text{기타포괄손익}$$
- ② 기타포괄손익 : 재평가잉여금변동액,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장의 외화재무제표 환산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파생금융자산평가손익
- ③ 영업이익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 ④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 ㉡ 두 개의 보고서 :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으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



## 제2장 기업가치평가 · 분석

p.425 맨 아래 다음 내용 추가

### 4 세법에 의한 가치평가

#### ① 상장주식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에 의해 산정하며,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할증평가를 함.

-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 20% 할증
-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 30% 할증

#### ②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함.  
단,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는 가중치를 2:3으로 함.

㉡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할증평가.

-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 : 20% 할증
-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 30% 할증

㉢ 비상장주식의 경우 영업권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에 합산하며, 여기서 영업권은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인율 10%, 지속기간 5년)하여 산정함.

-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 순손익가치의 산정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text{평가기준일 1년 전의 순손익액} \times 3 + \text{평가기준일 2년전의 순손익액} \times 2 + \text{평가기준일 1년전의 순손익액} \times 1) / 6$$

㉤ 순손익가치환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말함.

㉥ 순자산가치의 산출

•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의 총수

㉦ 발행주식의 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말하며, 자기주식수를 차감하지 아니함.